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14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15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3. 27.(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견서채택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서정세)

가. 제안이유

- 2001. 7월에 고시한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2001~2011) 반영지구에 대하여 고시일 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타당성 수요조사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

나. 관계법령

-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(구의회 의견청취)
-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(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등)
- 5년마다 타당성 조사

다.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조사(안) : 사하구

제2차매립기본계획서상(당초)			타당성 수요조사(변경안)	
매립지구명 (매립위치)	매립용도	매립면적(m ²)		변경내용 및 사유
		1단계 (‘01~‘05)	2단계 (‘06~‘11)	
다대 I 지구 (다대포해수욕장)	기타시설용지 (친수공원조성)	0.150000		· 1단계→2단계로 변경 · 제1차 연안정비계획 2단계사업 (2005-2009)반영됨
다대 V-1지구 (삼미매립지서측 야망정앞)	도시용지 (도로부지확보)		0.012000	· 폐 지 · 계획도로변경(공유수면제척)으로 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

- 다대포해수욕장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45호(2003.7.19)로 연안정비 계획 2단계(2005~2009 : 연안보전사업, A=200,000평)사업에 반영되어 2006년도 7억 원(국·시비)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⇒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(공유수면매립 의제처리)
- 삼미매립지 서측 야망정앞은 기존도시계획도로(중로1-81호선)의 노선변경(공유수면 부제외) 및 변경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선결정과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수립코자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5. 12. 23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가결(변경결정)되었으므로 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81	20	집산 도로	1,450	다대동 159-8 (대2-13)	다대동 산1-15 (대2-13)	일반 도로	중3-36	72.12.30	
변경	중로	1	81	20	집산 도로	1,450	다대동 159-8 (대2-13)	(중1-114)	일반 도로	중3-36	-	선형변경및 노선축소 (감200m)

※ 사유 : 기 노선대로 도로를 개설 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, 어업보상, 공사비 등 사업비 과다와 어업관련 집단민원발생 우려등 비효율적이므로 공유수면을 제척하여 육지부의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 변경결정

3. 검토의견

- 본 의견 청취 안은 사하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는 다대지구 일원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맞물리는 구상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교통 체계개선과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의 친수공원조성 등 향후 서부산권 시대의 미래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현안 이라 생각되며
- 금번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공유수면기본계획을 5년마다 사안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가·감·제척하는 정비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결정과 관련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
 -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친수공원조성사업은
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미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시행기간을 2006 -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여 2009년을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다음은 다대동 355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의 선형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도로는 지난 2005년 11월 23일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문결과 『당초 사업계획 안인 S자 선형을 직선선형』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사업비, 도로 사면, 절, 성토, 공유수면 등 7개항목에 걸쳐 다각적으로 검토분석 해본 결과 직선형보다는 S선형이 대민편익제고나 공사비 등 중요부분에서 우위를 점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.

○ 사안별로 분석해보면

•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경우

도로구조나 절취사면이 최소화되어 유리한 잇점이 있으나,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가 어렵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소요기간이 길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, 공유수면매립시 환경훼손은 물론 야망정, 주변 탐 등 자연경관을 해 할 우려가 높음, 그리고 공사비 과다와 보상문제 등으로 공사추진상 차질이 예상되는 등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사업집행에 부적절한 면이 많다고 판단됨

• 반면 도로선형이 S자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

다대1파출소 및 다대초등학교와 국제여객터미널, 다대현대아파트, 삼미매립지와 연결 도로망이 형성되어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대민편익제고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됨

-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법령에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친수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과 연계,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의 선형결정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의 행정절차와, 공사의 적정성과 안정성, 기술의 완성도, 주민편익, 향후 발전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당초안인 『S자선형이 직선형』 보다는 장점이 많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 청취 권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서부산권의 중심축의 한 분야인 다대지구의 미래청사진을 구상함에 있어 시도계획위원회 상정에 앞서 의결기관인 사하구 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였으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 될 수 있었음을 간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- 해당부서장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이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의회에 상정하여 의원들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건 서

1.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 개요

제2차매립기본계획서상(당초)			타당성 수요조사(변경안)	
매립지구명 (매립위치)	매립용도	매립면적(k㎡)		변경내용 및 사유
		1단계 (‘01~‘05)	2단계 (‘06~‘11)	
다대 I 지구 (다대포해수욕장)	기타시설용지 (친수공원조성)	0.15000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단계→2단계로 변경 · 제차 연안정비계획 2단계사업 (2005-2009)반영됨
다대 V-1지구 (삼미매립지서측 야망정앞)	도시용지 (도로부지확보)		0.012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폐 지 · 계획도로변경(공유수면제척)으로 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본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(안)은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친수공원조성과 삼미매립지 서측 야망정앞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취소를 위한 것으로서
-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친수공간 조성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추진되는 지하철1호선 연장공사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보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구의회 의견 청취가 수반되는 계획도로 변경에 있어서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2006. 3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